

제26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1. 12. 8.)

# 조례안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종호]



# 목 차

1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6
3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14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5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4
6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7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8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9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	45
10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5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64



##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1.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1. 29.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수 기준을 정하여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임 인용 조문 변경함(안 제1조·제2조)
  - 1) 「지방자치법」 제16조 ⇒ 「지방자치법」 제21조
- 나. 법령 위임범위에서 감사청구인 수 기준 변경(안 제2조)
  - 1) 기준 : 190명 ⇒ 150명
  -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1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규제혁신담당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11. 9.~11. 23.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감사청구인 주민수 기준을 변경하여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⑨ (생략)

### ↓[2022. 1. 13. 전부개정]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⑧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⑨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⑩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한 감사 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⑪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⑫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



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 기간)**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1.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1. 29.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른 관련 용어를 일괄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고 제때 시행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인용된 조문 변경(안 제1조~제24조)
  - 1) 24개 조례
  - 2) 위임 조문 변경
  - 3) 「지방자치법」 전반

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5조~제29조)

- 1) 5개 조례
- 2) 군수 ⇒ 군수와 의장
- 3) 「지방자치법」 제103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11. 10.~11. 23.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변경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법제처 통보 조례 위임사항

조례위임사항	구분
<b>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b>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
<b>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b>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
<b>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b>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
<b>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b>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b>제141조(회계의 구분)</b>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b>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b>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
<b>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b>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

<p>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b>조례</b>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b>조례</b>로 정한다.</p> <p>③ 인구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b>조례</b>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p> <p>④ 동·리에서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b>조례</b>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p> <p>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b>조례</b>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p>	
<p>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b>조례</b>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p> <p>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b>조례</b>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p> <p>②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b>조례</b>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p>	<p>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b>조례</b>로 정한다.</p>	<p>종전 제9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자체에서는 관련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필요가 있음</p>

<p><b>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b>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b>조례</b>·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p>	<p>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법령과 의회규칙 등에 따를 수 있으므로 <b>조례로 정할 사항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만 조례를 정할 필요 있음</b></p>
<p><b>제117조(사무의 위임 등)</b>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b>조례</b>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b>조례</b>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b>조례</b>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지자체의 현행 민간위탁 조례의 제1조 목적 조문 등 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b>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b>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b>조례</b>·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p>	
<p><b>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b>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b>조례</b>로 정한다.</p>	<p>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b>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b>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b>조례</b>로 정한다.</p>	<p>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b>제134조(하부행정기구)</b> 지방자치단체는 <b>조례</b>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p>	

<p><b>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b>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b>조례</b>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b>조례</b>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b>조례</b>로 정할 수 있다.</p>	
<p><b>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b>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b>조례</b>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讓與)·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p>	
<p><b>제161조(공공시설)</b>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b>조례</b>로 정한다.</p>	
<p><b>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b>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b>조례</b>로 정한다.</p> <p><b>부칙</b>  <b>제16조(지방의회의원의상해·사망등의보상에관한경과조치)</b>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의회의원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b>제43조(겸직 등 금지)</b>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b>조례</b>로 정한다.</p>	<p>종전 제35조제3항이 제43조제3항으로 이동규정되어 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b>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b>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b>조례</b>로 정하여야 한다.</p>	<p>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b>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b>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b>조례</b>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b>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b>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b>조례</b>로 정한다.</p>	<p>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제53조(정례회)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b>조례</b>로 정한다.</p>	<p>종전 제44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되어 대통령령에 기속되지 않고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므로 지자체에서는 참고하기 바람</p>
<p>제54조(임시회)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b>조례</b>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p> <p>부칙 제18조(임시회소집요구등에관한경과조치)임시회 소집 요구 및 의안의 발의 등에 관하여는 제54조제3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종전 제45조제2항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으로 정하고 있던 규정에서 조례위임사항으로 변경됨. 부칙 제18조에 따라 조례 제정·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p>
<p>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b>조례</b>로 정한다.</p>	<p>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b>조례</b>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b>조례</b>로 정한다.</p>	<p>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b>조례</b>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p>	<p>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음</p>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조(입법예고 기간)**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1.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1. 29.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20조(2022. 1. 13.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군수의 책무와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1) 대상 :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
  - 2) 제외 :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다.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의 보완요구 등을 정함(안 제4조·제5조)

1) 방법 : 주민이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서 작성·제출

2) 보완요구 : 제출된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 사항기간 표시

라. 의견의 검토 및 처리를 정함(안 제6조)

1) 규칙의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된 의견서를 법제담당 부서와 협의 거쳐 검토

2) 검토 결과를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 문서로 통보

마. 의견의 반영과 차별대우의 금지 등을 정함(안 제7조·제8조)

1) 의견제출이 타당하면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

2) 주민이 의견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됨

바. 비밀 준수 의무 등을 정함(안 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1. 11.~11. 23.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20조(2022. 1. 13. 시행)에서 위임한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권의 부여와 절차를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 위임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 향상과 주민 권익 보호가 기대됨에 따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 기간)**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1.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1. 29.

## 2. 제안이유

- 국가시책과 군 현안 시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 반영 및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정원을 정비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15명 : 778명 ⇒ 793명(안 제25조)

- 1) 집행기관의 정원 : 증12명(764명 ⇒ 776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증3명(14명 ⇒ 17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4)

1)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14명

가) 현행 : 699명(본청326, 의회11, 직속기관121, 사업소37, 읍43, 면161)

나) 변경 : 713명(본청334, 의회14, 직속기관112, 사업소37, 읍42, 면174)

2) 연구직(연구사) 정원 : 증1명

가) 현행 : 6명(본청3, 직속기관2, 사업소1)

나) 변경 : 7명(본청3, 직속기관3, 사업소1)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4조·제29조·제30조·제38조

나. 예산조치 : 2022년 예산 1차 추경 634백만원 확보예정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1. 2.~11. 22.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거창군 기준인력 증원 반영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정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원 정비를 통한 원활한 군정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 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



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같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1.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1. 29.

## 2. 제안이유

- 거창군과 경상남도교육청의 업무협약으로 지정된 행복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1) 행복교육지구: 군과 교육청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
- 나. 교육장과 협력하여 매년 사업계획 수립(안 제3조)
- 다. 사업범위 및 비용분담을 정함(안 제4조)
  -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등
  - 2)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군과 교육청의 업무협약에 따라 조정·분담
- 라. 재정 지원을 정함(안 제5조)
- 마. 학교 등과의 협력을 정함(안 제6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나. 예산조치 : 2022년 예산 25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0. 6.~10. 2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거창군과 경상남도교육청의 업무협약으로 지정된 행복교육지구  
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 학교와 지역사회, 행정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거  
창군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행복교육지구의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거.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기회의 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 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29.] [경상남도조례 제5007호, 2021. 7. 29. 제정]

경상남도교육청(학교혁신과), 055-268-152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학생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6. (생략)

제7조(경남 행복교육지구 및 행복마을학교) ①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



통하고 협력하여 공교육을 혁신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내 시·군에 경남 행복교육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남 행복교육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장 또는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과 주민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행복마을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1.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1. 29.

## 2. 제안이유

- 아림예술제 지원을 위해 1996년에 설치된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목적인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안 제1조)
  - 1)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법」 제159조
- 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 1) 2021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2)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제3항
- 다. 법령 중복·재기재 규정 삭제(안 제13조)
  - 1) 시행규칙 : 「지방자치법」 제23조 재기재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2년 기금 500백만원 중 이자 5백만원 예산편성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0. 7.~10. 27.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거창군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을 위한 아림예술제의 추진을 위한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아림예술제의 지속적인 개최와 발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조 (생략)

**제8조(조례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22조(생략)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3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

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의견17-0201

### 1. 질의요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

### 2. 의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1.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1. 29.

## 2. 제안이유

-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마을 이장,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등에게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목재에 관한 지식 습득 및 목재의 중요성을 알려 목재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체험료 감경대상 확대함(안 제10조)
  - 1)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 2)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 나. 체험료 등 지원 신설함(안 제15조)
  - 1) 범위 : 체험료, 재료비, 강사료 등, 나무장난감 무료대여

- 2) 대상 : 학교 소속 교직원 및 학생, 이장 및 반장, 기관·단체 임직원, 3세 이상 13세 이하 자녀와 주소를 같이 두는 세대  
다. 체험프로그램 체험료 기준 변경(안 별표 1)
- 1) 기준시간 : 4시간⇒3시간
  - 2) 1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최대한도 정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 71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10. 25.~11. 15.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감경 대상 확대 및 체험료 기준 변경을 통한 군민 체험기회 확대와 목재문화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재정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883호, 2021. 7. 13., 타법개정]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 9. 6.>

-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 지출로 한다.
-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④ 삭제 <2011. 9. 6.>
-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11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1의2. “원목”이란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 7의2.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7의3.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8의2.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8의3. (생략)

9~11. (생략)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국내 또는 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이하 “합법벌채”라 한다)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유통·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수입·유통 및 생산·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1.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1. 29.

## 2. 제안이유

- 노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설치목적에 달성한 양성평등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성·운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제2조)
  - 1)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법」 제159조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 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1) 2021. 12. 31. ⇒ 2026. 12. 31.

- 2)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다. 양성평등기금 폐지(안 제1조·제2조·제4조·제6조·제8조·제9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2) 「지방자치법」 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금 2,415,958천원 중 이자 86,750천원  
예산편성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11. 3.~11. 22.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노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양성평등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거창군 노인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3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4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5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21. 7. 27. 시행 2022.1.28.>]

부칙 <제18325호, 2021. 7.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의견17-0201

1. 질의요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

2. 의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 · 수익허가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1.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1. 29.

### 2. 제안이유

- (재)거창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문화공연 기획 및 운영, 거창한마당대축제 및 국제연극제 기획·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임
- 거창군 문화센터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임
- 대상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상대여 사용하여 왔음

###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개요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81(김천리 216-5번지)
- 부지 : 15,578㎡(거창문화센터 사용면적 : 6,564㎡)

- 연 면 적 : 4,363.27m<sup>2</sup>
- 건축면적 : 2,447.10m<sup>2</sup>
- 소 유 자 : 거창군
- 사 업 비 : 13,160백만원
- 사용·수익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허가대상 : (재)거창문화재단(이사장 거창군수)

#### 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세부내역

- 사용료 감면(면제) : 267,102,153원
  - 부지 : 3,166,473,600원 / 공시지가(482,400원) × 면적(6,564m<sup>2</sup>)
  - 건물 : 2,175,568,706원(시가표준액)
  - 사용료 산출 : 5,342,042,306원×50/1,000 = 267,102,153원
  - ※ 산출내역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시가표준액) × 50/1,000(요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4. 참고사항

### 가. 추진경과

- 2017. 1. ~ 2021. 12. 31. 부동산 무상임대

○ 2021. 11.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나. 향후계획

○ 2021. 12. : (재)거창문화재단에서 사용·수익허가 신청

○ 2021. 12. : 사용·수익허가(재산보존 책임, 원상태로 반환 등)

○ 2022. 1. 1. ~ 2024. 12. 31. : 3년간 무상사용

다. 기대효과

○ 거창문화재단에서 거창문화센터를 무상사용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

라.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5조

○ 거창군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 거창군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마.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참조

# 위치도 및 연왕사진



사진설명 : 거창읍 수남로 2181 위치도



사진설명 : 거창읍 수남로 2181 현장사진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따라 행정재산인 거창군 문화센터를 거창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가하고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 무상 사용 허가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으로,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군민 예술활동공간 및 공공행사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 거창군 문화센터가 군민 모두의 문화공간으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문화예술을 주도하는 거창문화재단에 무상 사용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

용·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27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8. 4.]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2020. 12. 2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2020. 12. 22.>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전문개정 2009. 4. 24.]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2021.07.07 조례 제2652호

**제15조(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수익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방법
3.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 5. 허가조건

③ 군수는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 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

## □ 거창군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2014.07.30 조례 제2208호

**제 4조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2014.7.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2014.7.30)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14.7.30)

④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014.07.30 규칙 제1162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규칙

제 2조 (위탁관리 신청)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거창군 문화센터(이하“문화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4 2014.7.30.)

##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16.11.23 조례 제2339호

**제4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1.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1. 29.

###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① 가조 수월리 일원 공원 조성사업

##### 1. 제안이유

- 당해 부지는 1995년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수월공원)으로 결정된 수월리 495-5번지 인접 필지로서
- 가조 도심지의 점진적 확대, 향노화힐링랜드 개장 등 더 커진 가조권역의 실정에 맞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공원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 2. 주요내용

###### 가. 취득(또는 처분) 개요

-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495 등 3필지

- 토지면적 : 1,545m<sup>2</sup>(편입면적)
- 소 유 자 : 김\*규 등 2명
- 취득금액 : 463,500천원(m<sup>2</sup>당 300천원 / 가감정)

####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 가격 (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				
계				1,545	1,545	137,225			
취득	토지	가조 수월 495	과	704	704	56,390	2022	수월리 일원 공원 조성사업	김*규
취득	토지	가조 수월 495-6	과	660	660	62,898	2022	수월리 일원 공원 조성사업	최*준
취득	토지	가조 수월 495-10	과	181	181	17,937	2022	수월리 일원 공원 조성사업	최*준

※ 토지기준가격 = 공시지가 × 면적

#### 다. 추진경과

- 2020. 5. : 수월공원 결정 부지(495-5) 매입 완료

#### 라. 향후계획

- 2022. 1월 : 취득재산 감정평가 실시
- 2022. 1월 ~ 3월 : 토지보상 협의

#### 마. 기대효과

- 가조권역 개발사업에 따른 공원시설 확보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시환경개선과 주민편익제공으로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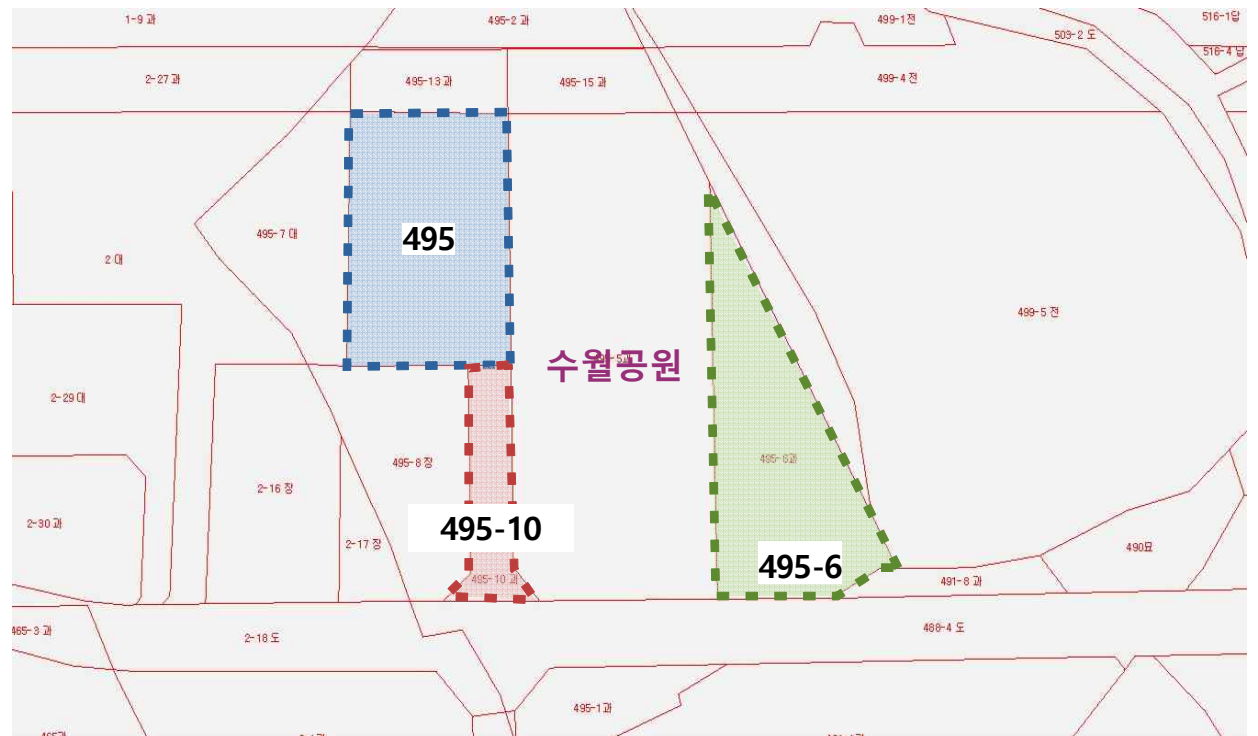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참조

# 위치도 및 연왕사진

□ 위치도



사진설명 : 수월공원 위치도



사진설명 : 수월공원 일원 지적도



□ 현황사진



수월리 495



수월리 495-6



수월리 495-10

### 3. 검토의견

- 당해 부지는 1995년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수월공원)으로 결정된 수월리 495-5번지에 인접한 3개의 필지로서 가조권역개발사업에 따른 공원시설 부지로 협의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원시설 확보로 주민편익 제공과 도시이미지 경관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 취득의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 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1.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1. 29.

### 2. 제안이유

-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위탁기간(2021.1.1.~2022.12.31.) 중 수탁기관인 농업회사법인(주)NH유통의 해산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 3. 위탁개요

- 가. 사업명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 나. 위탁기간 : 2022. 2. 1. ~ 2023. 12. 31.
- 다. 위탁대상 사무 : 여성결혼이민자 채용 및 관리
  - 여성결혼이민자 상시고용 : 연간 5~10명
  -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 준수

- 근무내용 : 결혼이주여성 능력에 따라 다양한 업무 수행
- 월 급여 : 1인당 월 근로임금 50만원 이내 채용 장려금 지급  
(위탁금), 그 외 임금은 수탁기관 부담
- 라. 수탁기관 자격기준 : 4대 보험 가입하는 기업체 또는 법인
  - 연중 5~10명 정도의 여성결혼이민자 상시채용과 관리
-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 바. 선정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4. 참고사항

### 가. 위탁 변경사유

- 2021. 12. 31. 현재 수탁기관인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 해산 예정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5조(재위탁 제한)에 따라 법인 해산 시 위·수탁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나.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창출사업은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 있음
- 여성결혼이민자 능력에 맞는 다양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기업체 또는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

### 다.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라. 향후계획

- 2021. 12.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 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별도계획 수립)
- 2022. 1.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  
(위탁기간 : 2022. 2. 1. ~ 2023. 12. 31)

마. 예산조치 : 위탁운영비 연간 30,000천원

바. 위탁 운영계획 : 따로 붙임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위탁 계획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수탁기관인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의 해산으로 인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 1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2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여성결혼이민자 공개채용, 근로계약 체결, 상시고용
- 위탁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1인당 월 근로임금 50%이내(50만원 이하) 위탁금으로 보조
- 위 탁 금 : 30,000천원 / 군비
- 현 위탁체 현황

수탁기관	대 표	위 치	위탁기간	업 종	변동사항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	김학두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2021. 1. 1. ~ 2022. 12. 31. (2년)	농산물 유통	2021.12.31. 법인 해산

※ 최초위탁 : 2011. 3. 2.

- 위탁 변경사유
  - 2021. 12. 31. 현재 수탁기관인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 해산 예정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5조(재위탁 제한)에 따라 법인 해산 시 위·수탁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2021. 9. 24. 거창한거창 조합공동사업법인 법인 등기

: 2021. 12월 중 (주)NH유통과 업무승계 내용 확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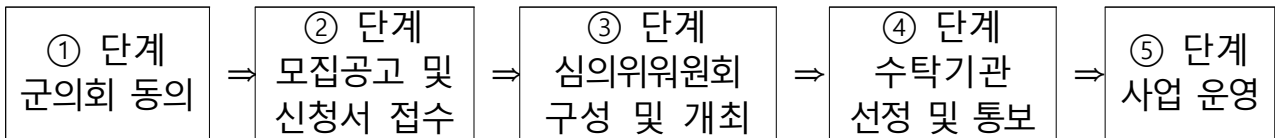
○ 위탁기간 : 2022. 2. 1. ~ 2023. 12. 31.

○ 고용현황

고용분야	고용현황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과선별 작업	9명	9명	9명	14명	9명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 추진절차



### 3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자치사무에 대한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1. 11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1. 12. 27. ~ 2022. 1. 10.(15일간)

- 접수기간 : 2022. 1. 4. ~ 1. 10.(7일간)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등

- 신청자격 : 여성결혼이민자 상시고용이 가능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관내 소재 업체 또는 법인(단체)

○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구성인원 : 6명 이상 9명 이하 / 위원장 포함

- 심의위원회 개최 : 2022. 1월 중

- 선정기준 :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장비·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등

- 심의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 위탁계약 체결 : 2022. 1월 중
- 위탁기간 : 2022. 2. 1. ~ 2023. 12. 31.

#### **4** 향후 추진일정

- 2021. 12.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 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별도계획 수립)
- 2022. 1.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  
(위탁기간 : 2022. 2. 1. ~ 2023. 12. 31.)

붙임 관련 법규 1부. 끝.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수탁기관인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의 해산으로 인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사전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 위탁기간은 2년이며, 여성결혼이민자 채용, 근로계약 체결, 상시고용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 능력에 맞는 다양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기업체 또는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부합되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며
- 수탁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임.



## 관련법령 발췌

###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